

- 0 제조업소명(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) 광고에 포함할 것
- 0 건강기능식품임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할 것

비디오	자막	오디오
-----	----	-----

기능성 원료 3d

삭제(시험내용 내 제품정보)



※ 시험내용은 제품정보와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할 것



삭제

제품이미지

saengi@7kr배한성: 기능성 원료, 은행잎 추출물의 인체시험 결과, ~~혈액의 지혈,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이 응집, 즉 한군데에 엉겨서 뭉치는 것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습니다.~~

삭제

삭제

삭제

~~혈액의 차지고 끈끈한 성질인 점성이 섭취전후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, 혈관이 넓어지는 혈관확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. 또한 단어/색채를 기억하는 기억력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학습효율성, 작업 기억력 또한 유의적 개선까지 확인되었습니다.~~
배한성 **그래서, 결론은** 경남징코진골드!

삭제

삭제

삭제

배한성: 기능성 원료, 은행잎 추출물의 인체 시험 결과, ~~혈액의 지혈,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이 응집, 즉 한군데에 엉겨서 뭉치는 것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습니다.~~

삭제

삭제

~~혈액의 차지고 끈끈한 성질인 점성이 섭취전후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, 혈관이 넓어지는 혈관확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. 또한 단어/색채를 기억하는 기억력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학습효율성, 작업 기억력 또한 유의적 개선까지 확인되었습니다.~~

배한성: **그래서, 결론은** 경남징코진골드!

삭제

인체적용시험내용을 광고에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'모든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'을 명시할 것

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고물로 수정신청이 필요합니다.

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고물로 수정신청이 필요합니다.

◎ 건강정보는 명확히 구분하며 건강정보는 제품정보와 연결되지 않게 한 곳(맨 뒤)에 모아 구획을 나눠 공신력 있는 출처를 제공하여 함께 광고할 것. 또한 '본 정보는 제품정보와 관련 없는 내용'임을 명시하여 함께 광고할 것

건강정보

비디오	자막	오디오
	<p>혈행이 막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, 10초! 배한성: 시속 216km의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혈액, 혈액이 우리 몸 한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, 단 1분 혈관이 막히는데 걸리는 시간은, 단 10초</p>	<p>혈행이 막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, 10초! 배한성: 시속 216km의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혈액, 혈액이 우리 몸 한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 간은, 단 1분 혈관이 막히는데 걸리는 시간은, 단 10초</p>
	<p>배한성: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... 특히 혈행은 건강의 제 1조건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여기에, 나이들수록 걱정되는 기억력까지.. 혈행, 기억력, 지키십시오, 늦기전에, 후회하기전에! 지금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관리하십시오!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삭제</p>	<p>배한성: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... 특히 혈행 은 건강의 제 1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. 여기에, 나이들수록 걱정되는 기억력까지.. 혈행, 기억력, 지키십시오, 늦기전에, 후회하기전에! 지금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관리하십시오!</p>

표시·광고 심의결과 통보 알림

회사명	(주)생기의집	대표자	조두영
제품명	징코진골드	심의번호	210720190
표시·광고매체	유선방송(TV, 케이블 TV)	심의필여부	
심의결과	수정적합		
시정사항	※ 붙임 자료의 시정사항을 확인한 후 수정통보할 것		
참고사항	[참고사항] 0 제품명은 품목제조신고증(수입신고증)에 기재된 명칭으로 광고할 것		
시정사유	0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 등 - 거짓·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-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		
※ 근거법령 :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. ※ 유의사항 1) 심의결과가 '수정적합'인 경우 심의필 날인없이 임의로 광고할 수 없음. 시정사항을 수정통보지 않은 광고물을 광고하는 경우, <u>허위·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.</u> 2) 본 결과통보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임의로 해석하여 표시·광고할 수 없음 3) 부적합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문안만을 지적 4) [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]에 의거, 환불/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/교환 기준을 명시 5) 심의필 마크 사용시 광고심의 홈페이지(http://ad.khsa.or.kr) 알림마당 공지사항 10번 참조			

2021. 07. 20



(사)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
표시·광고심의위원회